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19. 7. .
발 의 자	김재우 의원 외 15명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 (김재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9. 7. .

발 의 자 : 김재우 · 강승수 · 권재욱 · 김택호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안주찬 · 양진오 · 이선우 · 이지연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의원(16명)

1. 제안이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확대추진으로 명품 교육도시 실현과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규정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교복구입비의 지원 및 지원금액(안 제4조~제5조)
- 라.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안 제6조~제7조)
- 마. 환수(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교육기본법」 제4조, 제27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다. 기 타 : 조례안 예고(2019. 6. 26. ~ 7. 2.) 결과 의견없음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자절약 및 친환경 교육 실천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 물려주기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제5조(지원금액)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다만, 경상북도 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 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관내·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이하 “관할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구미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주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중복여부	중복지원 여(), 중복지원 부()	지원금액	원
------	----------------------	------	---

위와 같이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교복 지원을 위해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한 경비의 지출(세출)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학생 1인당 매년 시장이 정한 지원금액 범위에서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계함.
- 2019년 경상북도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 권고가액 : 305,478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해당없음						
	소계(a)						
세출	○ 교복 지원	2,930	2,930	2,930	2,930	2,930	14,650
	소계(b)	2,930	2,930	2,930	2,930	2,930	14,650
□ 총 비용(a-b)		2,930	2,930	2,930	2,930	2,930	14,65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2,930	2,930	2,930	2,930	2,930	14,650
민 간							
기 타							
합 계		2,930	2,930	2,930	2,930	2,930	14,650

5. 부대의견 : 의견없음

6.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 윤지연(054-480-270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교복 지원 : 2,929,500천원

- 예산편성 : 교육지원과
- 산출기초 : 300천원 × 9,765명 정도 = 2,929,500천원